

9월 14일 공부 자가 테스트

1.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게 된다.
- ③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승낙의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 ④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⑤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만 있었던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 ①(O)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판 2006.09.14. 2005다45537).
- ②(O)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99다23888).
- ③(O)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의 일방적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반면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례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88다카20866).
- ④(O)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88다카6358).
- ⑤(X)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정답 ⑤

2.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해설 및 정답

- ①(O)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대판 2011.06.30. 2011다8614).
- ②(X)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판 2012.08.30. 2011다32785, 32792).
- ③(X)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12.13. 87다카2803 전합).
- ④(X)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84.09.11. 83다카2288).
- ⑤(X)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11.06.30. 2011다8614). 즉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모두 효력이 있다.

정답 ①

3.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③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④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고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 ①(X)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454조 제1항).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인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대판 2013. 09. 13. 2011다56033).
- ②(O)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453조 제2항). 반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③(X) 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므로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인수에 의해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와 같은 종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 ④(X)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86조). 종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채무의 성립, 존속, 이행을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는 채무인수인도 주장할 수 있다.
- ⑤(X) 조건부·기한부 채무도 이미 성립된 채무로서 인수의 대상이 되고, 또한 불완전채무나 장래의 채무도 인수할 수 있다.

정답 ②

4.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채무인수가 있으면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취소권·해제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 ④ 전(前)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이다.

해설 및 정답

- ①(O) 병존적 채무인수는 사실상의 인적담보의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할 수 있다(대판 1988. 11. 22. 87다카1836).
- ②(X) 채무인수는 채무의 이전이지 채무자지위의 이전이 아니므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상계권은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③(O) 이행인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하기로 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 ④(O)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제459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O)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3. 02. 12. 92다23193).

정답 ②